

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

수신자 전 회원사

(참조)

제 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(수소 연료보조금)

1. 전세연 제2021-134호 (2021.09.24.)와 관련입니다.

2.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수소 연료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
하고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대상 · 기준 · 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여객운수사업법 시
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 및 시행('21.9.24)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,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
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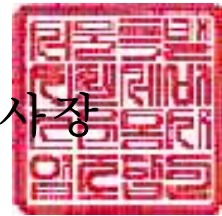
※ 연료보조금(kg당 3,500원) 지급대상 : 전세버스, 노선버스, 택시

※ 붙임 : 가. 전자관보(보조금 지급 방법 참고3 참조) 1부.

나.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부. [끝]

※붙임자료는 조합홈페이지(www.tourbus.or.kr)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



과 장 박영수 부 장 라영석 실 장 박호동 전무이사 박태환

협조자

시행 서전버조 21- 176호 (2021.09.27) 접수 ()
우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(교통회관 11층) / <http://www.tourbus.or.kr>
전화 02-422-0019 전송 02-418-0071 / / 공개

"안전띠는 생명띠 정지선은 생명선"